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사전투표·개표 바로 알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모든 선거과정에는 **정당추천위원, 정당·후보자별 참관인 등이 참여하거나 CCTV·개표상황표 공개** 등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30~50만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선관위 전임직원 3,022명과 각급 위원 20,000여명 외에도 **대다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국민, 국가·지방공무원이 투표·개표사무를 직접 집행**하고 있으며 선관위 직원은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 투·개표사무에 참여하는 국가·지방공무원과 일반국민은 그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도록 투·개표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부정선거 주장이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일각에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부당한 것처럼 다수 국민들을 오도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왜곡하는 것은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의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하고, 나아가 공정한 선거관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목차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사전투표·개표 바로 알기



## 사전투표

- 1. 사전투표제도 6
- 2. 사전투표절차 6
- 3. 사례별 설명 9



## 사전투표함 보관 및 이송

- 1.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10
- 2. 우편투표함 보관 10
- 3. CCTV 녹화 및 모니터링 10
- 4. 개표소 이송 10
- 5. 사례별 설명 11



## 개표

- 1. 개표방법 12
- 2. 개표절차 12
- 3. 사례별 설명 16

\* 참고자료 | 투표지분류기 18



### 알려두기

우리나라는 선거인의 투표 편리성 향상과 참정권 확대를 위하여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거일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이 제도들 중에서 국민들의 주요 관심분야인 사전투표와 개표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사전투표

## 사전투표 제도

-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주소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선거일 투표와 달리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선거인의 투표편의가 향상되었습니다.

## 사전투표 절차

### ① 투표소 입장

-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안내요원에게 안내 또는 관외 진행방향을 안내받아 본인 확인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 「관내」와 「관외」가 뭐가요?

-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안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며, 관외선거인은 구·시·군 밖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입니다.
- ※ 다만 국회의원선거에서 1개의 구·시·군 안에 2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선거구를,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관내·관외를 구분
-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는 등기우편으로 선거인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배달되므로, 관외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합니다.

예시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종로구인 선거인이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에 종로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내선거인, 종로구 외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이 됩니다.

국회의원선거



종로구 거주

종로구 내 투표소

관내 선거인

종로구 외 투표소

관외 선거인

## 2 본인여부 확인

-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본인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펜을 이용하여 성명을 기재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선거인 본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란?

- 구·시·군청에서 작성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를 중앙선거위에서 전국 선거인을 하나로 통합해 만든 명부로,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를 취합한 자료일 뿐, 개인이 어느 후보자에 투표하였는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 3 투표용지 수령과 기표

-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투표함에 넣습니다.

### 사전투표용지에 관한 모든 것!

- 선거인이 투표소에 방문하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하여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출력**합니다.



선거인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청인(廳印)**

선거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 **상단**과 **하단**의 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한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 **사인(私印)**

QR코드 :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위명, 일련번호의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

# 사전투표

## 여기서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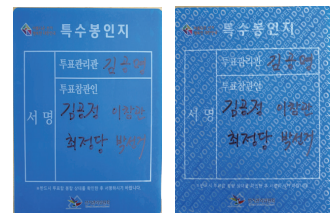
**Q** 사전투표기간 전에 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한 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해두고 사전투표일의 실제 투표지와 교체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제도는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에, ❶ 얼마나 많은 선거인이 사전 투표를 할지, ❷ 어느 주소지의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지, ❸ 해당 선거인이 전국 어느 투표소를 방문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선거인이 방문할 사전투표소를 예측하여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주소 라벨지를 미리 출력해 두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지를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유권자가 실제 기표한 사전투표지와 교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4 투표마감

- 사전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합니다.
- 사전투표관리관은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으로 관외투표용지 교부수를 확인 후,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회송용봉투 수를 확인하고 회송용봉투 운반상자에 정리합니다.
- 관내사전투표함은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각 1명이 봉인지에 서명합니다.
- 사전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호송경찰과 동행하여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에 인계하고, 관내사전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는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합니다.



정상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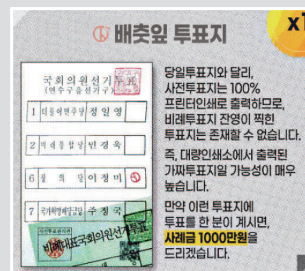


## 사례별 설명자료

**Q** 지역구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일부가 겹쳐 인쇄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는 대량 인쇄된 가짜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지역구 투표용지에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과정에 배출구에 손을 대는 등의 원인으로 일부 겹쳐 인쇄된 것입니다.

겹쳐 인쇄된 투표지의 잉크성분, 종이 색상 등에 대한 법원 감정 결과 위조된 투표용지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투표사무원이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붙잡고,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등 발급기 운용상 부주의로 인해 겹쳐 인쇄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함(2022. 7. 28 대법원 선고 2020수30 판결).



**Q** 사전투표소 통신망은 안전한가요?

**A** 사전투표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 · 일반인터넷망과 분리된 통신망으로서 비인가 단말기가 접속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해킹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Q** 같은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중복하여 투표할 수 있지 않나요?

**A** 불가능합니다.

- 사전투표를 하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전산상의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됩니다. 만약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다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면, 본인 확인 시 명부단말기(노트북 PC)에 투표한 사실이 표시되므로 재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사전투표함 보관 및 이송

##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 사전투표소로부터 이송된 관내사전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위 내 CCTV 및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을 잠그고 개폐부분을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과 사무국(과)장이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합니다.

## 우편투표함\* 보관

\* 우편으로 접수한 관외  
사전·거소·선상·재외  
선거투표의 회송용봉투  
보관

- 구·시·군선거관위 내 CCTV 및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합니다.
- 우체국으로부터 우편투표(관외사전·거소·선상·재외투표) 회송용봉투가 구·시·군선거관위에 도착하면,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이 구·시·군선거관위로 출석하여 회송용봉투를 비치된 우편투표함에 투입한 후 투입구를 봉인합니다.
-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을 잠그고 개폐부분을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과 사무국(과)장이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합니다.

## CCTV 녹화 및 모니터링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개표소로 이송할 때까지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로 녹화하며, 중앙선거관위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 개표소 이송

-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개표소로 이송하며, 이송시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 및 호송경찰과 동행합니다.

## 사례별 설명자료

**Q** 사전투표일 이후 개표소로 이송 전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보관하는 도중 투표함 또는 투표지 바꿔치기가 가능하지 않나요?

**A** 불가능합니다. 투표함 보관의 모든 과정은 CCTV로 녹화하며, 중앙선거위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로 녹화할 뿐만 아니라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을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과 사무국(과)장이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합니다.

선거인은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신청 후 열람용 모니터를 통하여 열람 가능함.



**Q**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수송하는 중 차 안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함 등 수송 시 정당·후보자가 지정하는 개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합니다.

「공직선거법」제176조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7조 :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정당 또는 후보자별 1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기며,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음.





# 개 표

## 개표 방법

- 투표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유효·무효를 구분하는 수작업 개표로 진행합니다.

## 개표 절차

### 1 투표함 등 접수부

- 선거일 각 투표소에서 가지고 온 투표함 및 선거관계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 2 개함부



-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꺼내 선거별·선거구별로 구분한 후 운반용기에 담아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합니다.

### 3 투표지분류기운영부



- 개함부에서 인계받은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해 각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면서 그 매수를 세고 무효표이거나 유효표일지라도 판단이 어려운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구분됩니다.
- 개표 단위로 분류가 끝나면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분류된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인계합니다.

#### 투표지분류기란?

- 「공직선거법」제178조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기표 모양과 위치를 인식하여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하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개표상황표란?

- 개표상황표는 특정 투표구의 모든 개표 과정(투표지분류기 결과, 심사집계 결과, 위원 검열, 위원장 공표)을 기록한 서식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투표지분류기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는 통신장치(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며, 외부통신기능이 없어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모양과 위치를 인식하여 투표지를 정당 ·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작업 개표의 정확성 · 신속성 ·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계적 보조장치에 불과합니다.
-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심사 · 집계부에서 별도로 육안으로 확인 ·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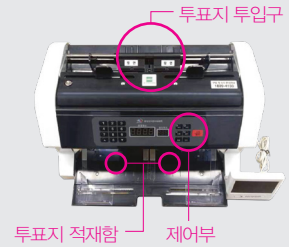
## 4 심사 · 집계부



- 분류된 투표지가 해당 정당 · 후보자의 유효 표가 맞는지, 계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등을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육안)으로 심사한 후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와 합산해 정당 · 후보자별 유효 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집계 · 구분합니다.
- 집계 · 구분한 결과를 개표상황표에 기재한 후, 개표상황표를 개표상황표 확인석으로 인계합니다.

## 투표지 심사계수기란?

-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투표지 심사와 계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 시중의 일반 계수기와 달리 계수 속도가 느려 계수기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5 개표상황표 확인석



-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수치 계수착오 여부 등 작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개표상황표는 투표지와 함께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합니다.

## 6 위원검열석



- 구·시·군선관위 위원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각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하고, 검열을 마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에게 인계합니다.

## 7 개표결과 공표·입력·공개



- 위원장은 최종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하고, 개표상황표에 따라 개표결과를 공표합니다.



-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결과를 개표보고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며, 동일한 자료가 각 방송사에도 함께 제공 됩니다.
- 동시에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내 지정장소에 게시 · 공개하고, 개표참관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Q 개표보고시스템이나 개표통신망을 이용해 개표결과를 전산조작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개표 전 과정은 정당 · 후보자가 지정한 다수의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이루어집니다.**
- 개표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공표하여 확정됩니다. 개표소에서 개표결과가 기재된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고, 이와 함께 개표보고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하여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므로 **개표소 내 결과와 개표보고시스템의 결과를 실시간 비교 · 대조 가능**하며, 개표참관인이 요청시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합니다.
- 개표보고시스템은 전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공표한 정당 · 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단순히 취합하고, 또한 취합된 개표진행상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결과가 실제 개표결과**이므로, 설사 개표보고시스템 입력수치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외부 해킹에 의한 조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 또한 개표보고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 · 일반인터넷망과 분리된 선거전용 폐쇄망으로 비인가 단말기가 접속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 정리부

-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투표지는 보관상자에 넣어 봉함 · 봉인하고, 개표가 모두 종료되면 투표지 등을 구 · 시 · 군선관위로 이송해 안전한 장소에서 당선인의 임기중\*에 보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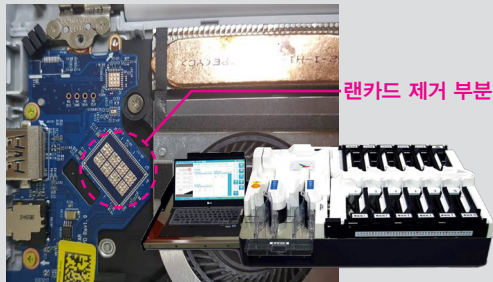
\* 다만 선거쟁송 제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 쟁송 종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 구 · 시 · 군선관위 결정으로 폐기 가능

## 사례별 설명자료

### Q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인가요?

**A 아닙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적 보조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는 통신장치(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며, 외부통신기능이 없어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모양과 위치를 인식하여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수작업 개표의 정확성·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장치에 불과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사무원에 의하여 재차 육안으로 확인·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위원 검열·위원장 공표 후 최종 확정됩니다.



「개함 → 투표지분류기 분류 → 육안 심사·확인 →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로 이루어지는 개표의 전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위한 보조기계임

### Q 사전투표 결과와 선거일투표 결과가 다른 것은 결과 조작 아닌가요?

**A 아닙니다.** 2020년 제21대 국선 이후 2022년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사전투표 참여 선거인과 선거일투표 참여 선거인의 지지성향 차이 등으로 인한 것일 뿐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 참여 선거인과 선거일투표 참여 선거인의 정당 지지 성향, 사전투표율, 선거일 당일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투표 득표율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대법원 2022.07.28. 선고 2020수30 판결).



## Q 각 정당의 후보자간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으로 일정한 것은 결과 조작 아닌가요?

제21대 국선 사전투표 득표비율	A당 후보자	B당 후보자
서울	63.92%	36.08%
인천	63.42%	36.58%
경기	63.54%	36.46%

## A 아닙니다

-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에서 A당과 B당 후보자간 사전투표 득표 비율을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부분만 비교하는 경우 63:36%이지만,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비율이 모두 다르며, 양당 후보자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결과가 모두 달라집니다.
- 해당 주장에서는 시 · 도단위의 득표비율을 계산하였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결정단위는 시 · 도가 아닌 국회의원지역구입니다.
- 굳이 의혹을 제기하는 논리대로 양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비율만 비교하더라도 전체 지역구 253개 중 6.7%에 불과한 17개 지역구(서울 5, 인천 2, 대전 1, 경기 6, 강원 1, 제주 2)에서만 63:36의 비율이 나타나며, 해당 지역구도 모든 후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 또한 63:36 비율 뿐만 아니라, 67:32의 비율도 17개 지역구에서, 61:38의 비율도 14개 지역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과거 선거의 개표결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혹을 제기하는 63:36의 비율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별 후보자간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과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대법원 2022.07.28. 선고 2020수30 판결).

## 참고 자료

### 투표지분류기

#### 도입연혁 등

- 과거 투표지분류기 도입 전 개표하는 경우 장시간 심야 개표로 개표사무원의 집중력이 저하되어 오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동시선거 실시 등으로 방대한 개표 물량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개표를 보조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장치로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 투표지분류기 도입으로 제15대 대통령선거(1997년) 대비 제16대 대통령선거(2002년)에서 개표시간은 평균 50%, 개표사무원수도 53% 정도로 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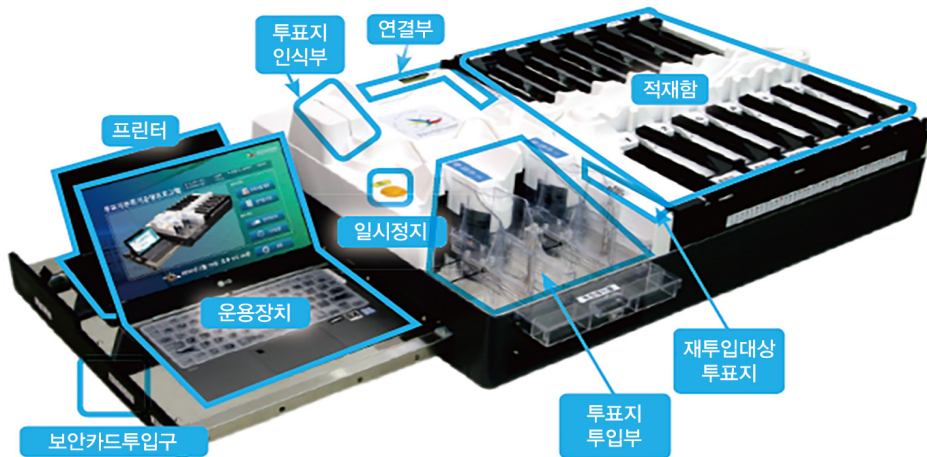
#### ※ 투표지분류기 도입 전·후 개표소요시간 등 비교

구분	제15대 대선(1997)	제16대 대선(2002)	비고
개표소요시간	평균 7시간 30분	평균 3시간 49분	3시간 41분 단축
개표사무원수	28,359명	13,528명	14,831명 감소

- 또한 도입 이후 선거쟁송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재검표가 있었으나 당선인이 바뀐 경우는 한 건도 없어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신속성이 입증되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말고 개표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 개표 완료시까지 시간이 훨씬 늘어나고 개표사무원 증가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무로 인한 개표의 부정확성도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필요합니다.

## 작동 원리

### 투표지분류기 구성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에 찍힌 기표 모양과 위치를 인식해 투표지를 정당 · 후보자별 적재함에 분류하고, 무효표이거나 유효표일지라도 판단이 어려운 투표지는 재확인대상 적재함으로 보냅니다.

## 보안

- 투표지분류기 운영장치는 통신장치(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등 외부에 일체 연결될 수 없으며, 검증용 보안카드를 통해 무결성 검증절차를 거친 후 작동합니다.
- 개표소에서 정당 · 후보자별 개표참관인이 투표지분류기의 모든 운영 과정을 참관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후 심사 · 집계부에서 정당 ·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가 해당 정당 · 후보자의 유효표가 맞는지, 계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등을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사전투표·개표 바로알기

---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사전투표·개표 바로 알기**

**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전화** 02)503-1114

**<http://www.nec.go.kr>**

---

